

I. 한-미 FTA 원산지 절차 요약

구분		한미 FTA								
발효일자		2012. 3. 15.								
협정국		미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서식	[권고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9서식 또는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한 서류(정형화된 양식 없음)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항목[협정문 제6.15조 2항]- 8개 항목(아래 참조)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4년								
	제출면제기준	미화 1천 불 이하의 소액물품								
	참고사항	[협정적용 영역] 미국 50개 주, 워싱턴 DC : 원산지 부호 US, 푸에르토리코 : 원산지 부호 PR ☞ 팜, 사이판 등 그 밖에 미국의 자치령은 협정대상 아님 C/O는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 WO :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PSR : 전적으로 어느 한 쪪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PE :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WO (Wholly Obtained), PSR (Products Specific Rules), PE (Produced Entirely)								
부가가치계산방법	계산방법	공제법(BD : Build-Down Method), 직접법(BU : Build-Up Method), 순원가법(NC : Net Cost Method) *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은 직접법, 공제법, 순원가법 선택적 사용								
	부가가치기준	직접법 30~40%, 공제법 35~55%								
	기준가격	조정가격(FOB)								
	비고	순원가 : 총원가에서 공제비용*을 제한 가격(자동차 및 그 부분품에 한하여 적용) * 공제비용 : 판촉, 마케팅, 판매 후 서비스, 로얄티, 운송·포장 및 포장, 이윤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								
역외가공	품목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 결정								
	지역									
	가공비									
제3국발행시송장		가능								
원산지증명	검증방법	직접, 간접(섬유류)								
	검증주체	수입국 세관, 수출국 세관(의류 및 섬유)								
	회신기간	12개월 이내 수출국 결정								
	회신주체	직접 - 수출자, 간접 - 수출국 세관								
	미회신 조치	협정관세 적용 제한								
	근거조항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제6.18조(검증)								
참고사항		<p>■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4항</p> <table border="1"> <tr> <td>1.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td></tr> <tr> <td>2. 한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td></tr> </table> <p>* 수리·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참조]협정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p>■ 한-미 FTA는 HS2002 기준으로 협상타결"연계표(HS2012 ↔ HS2002)"를 참고하여 작성</p> <table border="1"> <tr> <td>서류명</td><td>품목번호 작성기준</td></tr> <tr> <td>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td><td>HS2002</td></tr> <tr> <td>수출입신고서</td><td>HS2012</td></tr> </table> <p>■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항목[협정문 제6.15조 2항]</p> <p>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물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p>	1.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한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서류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HS2002	수출입신고서	HS2012
1.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한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서류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HS2002									
수출입신고서	HS2012									

II.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수출자)	Name (성명)				
	Address(주소)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Telephone (전화)	YYYY MM DD YYYY MM DD			
	Fax (팩스)	(년) (월) (일) (년) (월) (일)			
		From: ___/___/___ To: ___/___/___			
	E-mail (전자주소)	(부터) (까지)			
3. Producer (생산자)	Name (성명)				
	Address(주소)	4. Importer (수입자)			
	Telephone (전화)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5. 원산지증명 대상 물품내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단위)	HS No. (품목번호 6 단위)	Preference Criterion1) (원산지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6. Observations: (특이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_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회사명)
Name: (작성자 성명)	Title (직위)
YYYY MM DD (년) (월) (일) — — — / — — / — —	Telephone : Fax: (전화번호) (팩스번호)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 6.1 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 6.1 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 6.1 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 수입자, 생산자 한은 기재 생략 가능하며, 한글본과 영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례

[별지 제6호의9서식] <신설 2011.12.2>
미한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수출자)	Name (성명)	FTA 6 team			2. Blanket Period (원산지표괄증명기간)		
	Address(주소)	GSEP office #105			YYYY (년)	MM (월)	DD (일)
	Telephone (전화)	82. 53 - 580 - 5940			YYYY (년)	MM (월)	DD (일)
	Fax (팩스)	82. 53 - 580 - 5907			From 2013/06/11	To 2014/06/11	
	E-mail (전자주소)	FTA 6 team @ gmail.com			(부서)	(까지)	
3. Producer (생산자)	Name (성명)	Junghwa Tech. Co., Ltd			Name (성명)		
	Address(주소)	Seongseogdang 54-ro			Pennsylvania		
	Telephone (전화)	82. 53 - 581 - 2233			717 - 656 - 6892		
	Fax (팩스)	82. 53 - 582 - 3080			717 - 656 - 5350		
	E-mail (전자주소)	Junghwa @ junghwatlock.com			logantell @ pdg.locks.com		
5. 원산지증명 대상 물품 내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2002 No. (품목번호 HS 6단위)	Preference Criterion(s) (원산지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7	SMART PLUS	1,000 pcs	8301.40	CC		KOREA	
6. Observations: (특이사항)							
<p>I certify that:</p> <p>본인은 다음 시항을 확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여,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하위 전술 또는 종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본인은 이 증명서를 믿음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이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u>3</u>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 <u>3</u>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회사명) FTA 6 team			
Name: (직성자 성명) Kim Jisoo				Title (직위) General Director			
YYYY MM DD (년) (월) (일) 2013/06/11				Telephone: 82. 10. 8025. Fax 82. 53. 580. (전화번호) XXXX (팩스번호) XXXX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 수입자: 선사자: 편의 생활 가능여부, 험관봉사 영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